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34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11조)

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시설유지·관리)
(안 제12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0.23 ~ 2021.11.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지관리협의회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준공

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관 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통산업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농촌지역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평창군민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관리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등의 발생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및 이용료 등) 위탁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 결정은 해당 관리주체에서 회의를 통해 정하며, 군 직영 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7호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

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조례안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나. 비용발생 요인

- 직영시설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가발생비용 없음(기존 비용 발생분)

나. 추계 결과 (소요예산액 : 198,854천원)

- 인 건 비 : 119,044천원(4명)

- 기간제근로자 1인당 보수 : 1일 8시간, 주 5일, 52주 근무 기준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 부담금 등)

- 일반운영비 : 79,810천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6

